

‘전세버스’도 유가보조금 지원 「여객자동차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1,700개 업체, 4.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화물차,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·통학용 비율이 증가(46%^{’05}→73%^{’23})하고,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,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하였다.
 -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*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,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.
- * 유가 상승으로 인해 '25.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
-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 -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7월 중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할 계획이다.
 -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진항 (044-201-3823)
		담당자	서기관	정일웅 (044-201-3832)
		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